

정책명: 개정판 요금 고지와 고지서 납부
정책 번호: 1.100
채택일: 2020년 9월 22일
발효일: 2020년 11월 1일

이 정책은 Thermalito Water and Sewer District 의 요금 고지, 계정별 요금 납부와 수수료 등을 포함한 체납 계좌의 추심, 필요한 통고 사항들, 그리고 서비스 공급 중단 등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Thermalito Water and Sewer District 는 전화번호 530-533-0740 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의 “contact us” 서식을 통해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a. 캘리포니아 수도법 조항 22284 조와 25806 조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부동산 구획 (이하 “부동산”) 에 체납된 수도세나 하수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본사의 부동산 구획 (이하 “부동산”) 에 제공되는 수도와 하수도 계정 (이하 “계정”) 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주인 (이하 “주인”) 의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경우, 본사의 월별 계정 요금 고지서 (이하 “고지서”) 는 주인의 주소로 주인에게 보내집니다. 주인의 주소가 부동산의 주소와 다른 경우, 주인은 본사가 제공한 서식에 서면으로 부동산의 주소로 고지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사는 이하 언급된 고지서와 다른 모든 통보사항 (각각 이하 “체납 통보”, 전체를 합하여 이하 “체납 통보들”) 을 부동산의 주소로 보낼 것이지만, 또한 고지서와 체납 통보를 주인의 주소로도 주인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러한 사본을 보내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본사는 이사회 임의 결정에 따라 운영 수수료를 월별 계정 고지서에 추가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주인이 부동산의 세입자 혹은 입주자 (각각 이하 “입주자”) 가 그 부동산의 본사 고지서를 납부하도록 협의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주인이 이하 언급된 체납된 계정 잔액, 연체 벌금, 처리 수수료, 연체료, 서비스 중지 수수료, 서비스 재시작 수수료, 부당 조작 과금, 계량기 수거 수수료, 계량기 재설치 수수료 (처리 수수료, 연체료, 서비스 중지 수수료, 서비스 재시작 수수료, 부당 조작 과금, 계량기 수거 수수료, 계량기 재설치 수수료는 각각 이하 “체납 벌금”, 전체를 합하여 이하 “체납 벌금들”) 등을 포함한 계정의 모든 과금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b. 본사는 주인이 서면으로 거리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등을 포함한 다른 정확한 우편주소를 본사에 제공하지 않는 한, 이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점에서 주인의 주소는 부동산의 주소라 간주합니다. 주인은 주인의 우편 주소, 거리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사에 즉각 서면으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c. 주인의 부동산을 관리할 대리인 (이하 “대리인”) 을 지명하고 본사가 부동산에 관련하여 그 대리인과만 소통하기를 원하는 주인은, 본사의 부동산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그 과금 등에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본사가 주인이 아닌 대리인과만 소통하도록 요구하며 인가할 수 있게, 본사가 제공한 서면 서식을 완성하고 서명하여 본사에 보내야 합니다. 본사에 주인이 그러한 서식을 보내면, 주인이 본사에 서면으로 그러한 지명을 중단하고 철회할 때까지는, 본사는 대리인이 주인인 것처럼 대리인과 소통하며, 주인과 소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책과 관련된 사안들에 있어 부동산의 주인이 지명한 대리인은 그 주인으로 간주됩니다.

d. 본사는 각 계정에 매달 첫 근무일에 요금을 고지합니다. 각 고지서는 이전 고지서에서 납부되지 않은 잔액, 이전 고지서 후 수도 사용량, 월별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의 현재 요금, 그리고 총 납부액을 보여줍니다. 고지서는 받은 날 즉시 지불되어야 하며, 다음달의 5일째 오후 4시까지 전액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지서 납부액은 먼저 존재하는 연체료와 체납 벌금들 등을 포함한 이전 고지서에서 납부되지 않은 잔액에 적용되며, 그 후 잔액이

납는 경우 다음으로 현재 요금에 적용됩니다. 체납 벌금이 아닌, 이전 고지서에서 수도 사용량이나 수도 또는 하수도 서비스 요금의 잔액이 다음달의 5일째 오후 4시까지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는 연체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잔액의 1.5 퍼센트가 연체료로 부과됩니다.

e. 다음달의 15일 오후 4시까지 전액 납부되지 않은 이전 고지서 금액은 불량 체납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와 같이 불량 체납의 통보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본사의 이사회가 임의 결정에 따라 본사는 계정에 불량체납료 (이하 “불량체납료”) 를 부과하게 됩니다. 불량 체납 후 첫째 근무일에 본사는 주인에게 계정의 불량체납 상태와 불량체납료의 부과, 그리고 그 날짜 상 쌓인 이전 고지서 잔액, 연체료, 불량체납료, 현재 요금 등을 포함한 계정 전체 잔액 (이하 “불량체납잔액”) 을 불량체납 통보가 보내진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전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사가 부동산의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사실 등을 알리는 서면 통보 (이하 “불량체납 통보”) 를 보내게 됩니다.

f. 만약 불량체납잔액이 불량체납 통보가 보내진 달의 다음달 첫 근무일까지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우, 본사는 부동산의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부동산의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계획한 날의 최소 48시간 전에, 본사는 주인 또는 주민에게 계정이 첫 서비스 중지 통보에 적힌 날짜까지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가 중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확연하게 보이도록 부동산에 서비스 중지 통보 (이하 “첫 서비스 중지 통보”) 를 붙이게 됩니다. 첫 서비스 중지 통보는 또한 주인이나 주민에게,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가 다시 재시작되기 위해서는, 불량체납잔액이 전액 납부되어야 하는 것에 추가로 본사의 이사회가 임의 결정하는 금액의 서비스 중지 수수료 (이하 “서비스 중지 수수료”) 와 서비스 재시작 수수료 (이하 “서비스 재시작 수수료”) 를 납부해야 함을 알리게 됩니다. 이 수수료들은 부동산의 수도 서비스 전에 수도 중지 장치를 설치하고 수거해야하는 본사의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첫 서비스 중지 통보와 아래 g 조항에서 다루지는 2차 서비스 중지 통보는 또한 주인이나 주민에게, 부동산의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본사의 수도 서비스에 연결된 부동산의 방화 살수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방화 살수기 시스템이 보호하고 있는 주택 내 시설 등이 손실 위험에 노출될 것임을 알리게 됩니다.

g. 본사가 부동산의 수도와 수도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서비스 중지 후 2차 서비스 중지 통보 (이하 “2차 서비스 중지 통보”) 가 주인과 주민에게 부동산의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가 본사에 의해 중단되었으며, 주인이 불량체납잔액, 연체료, 그리고 부과된 모든 체납 벌금들 등을 포함한 모든 잔액을 전액 납부해야만이 서비스가 재개될 것임에 대해 알릴 수 있게 부동산에 확연하게 보이도록 붙여지고 주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h. 본사에 의해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가 중단된 부동산의 주인이나 주민이, 본사가 수도 서비스 전에 설치한 수도 중지 장치를 부당 조작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본사는 (i) 그로 인한 피해액을 충당하기 위해 이사회가 임의로 정한 금액의 장치 부당 조작 과금 (이하 “부당 조작 과금”) 을 부과할 것이며, 추가로 그러한 수도 중지 장치의 부당 조작이나 제거를 발견한 즉시, (ii) 부동산의 수도 계량기를 제거할 것입니다. 본사가 수도 계량기를 수거하고 난 후, 본사의 이사회가 임의로 정한 금액의 계량기 수거 수수료 (이하 “계량기 수거 수수료”) 가 또한 본사의 계량기 수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될 것입니다. 수도 계량기가 제거된 후 부동산에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를 재시작하기 위해서는, 주인은 전체 불량체납잔액과 쌓인 연체료와 본사의 이사회가 임의로 정한 금액의 계량기 재설치 수수료 (이하 “계량기 재설치 수수료”) 와 아래 1 조항에 따라 계정 상 필요한 보증금 등을 포함한 모든 체납 벌금들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i. 일반적인 납부 기간 내에 수도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고객들은, 12 개월 당 한 번, 연체료, 중단 수수료 또는 서비스의 중지 등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지불 약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고객의 요청을 검토할 때에 모든 상황을 고려할 것이며, 별도의 지불 약정이 타당한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별도의 지불 약정은 납부기일을 연장하거나 할부상환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조항 하에 주어진 별도의 지불 약정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추후 요금들을 내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비스 중지 통보가 주어지게 됩니다. 서비스 중지 통보는 서비스의 중지 전 최소 5 일 이전에 부동산에 배달되는 첫 서비스 중지 통보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의학적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지불 약정: 아래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며 캘리포니아주가 요하는 문서를 제공한 고객들을 위해, 본사는 서비스의 중지를 피하기 위한 별도의 지불 약정을 제안할 것입니다. 지불 약정의 조건은 본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 1) 주 의료 기관의 의학적 진단서: 고객은 주 의료 기관 (내과 전문의, 일반의,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 가정의, 인가된 의사 보조자, 주 의료 병동, 병원, 또는 외래 환자 병동) 에서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의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서비스의 중지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거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재정적 어려움: 고객은 고객이 본사의 일반 청구 주기에 따라 재정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i) 사기와 위증에 대한 형벌을 감수하고 현재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의 이하임을 언명하거나; 또는 (ii) 가계의 한 구성원이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부조, Medi-Cal, 보조 소득 보장/주 보조 지급 프로그램, 또는 여성, 영아, 유아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보조 영양 프로그램 등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
- 3) 지불 약정: 고객은 본사가 선택한 지불 약정에 서명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청구 기간으로 연장되는 별도 지불 약정은 할부상환 약정으로 취급되며, 서면으로 고객이 서명해야 합니다. 할부상환 약정은, 고지서의 원래 만기일로부터 12 개월 넘지 않는 선에서 본사가 정한 기간 동안 남은 미지불 잔액을 할부하게 됩니다. 고객은 할부상환 약정의 조건을 따라야 하며 각 추후 청구 기간에 요금이 쌓이는 대로 납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고객은 할부상환 약정에 따라 불량채납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동안에 추후 미납 금액에 대해 새로운 지불 약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 하에 주어진 별도 지불 약정 조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30 일 동안 추후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의 중단 전 최소 5 일 이전에 부동산에 확연하게 붙여지는 첫 서비스 중지 통보가 주어지게 됩니다.

j. 계정의 요금 납부를 위해 제출된 모든 수수료, 요금, 또는 수표 또는 크레딧/데빗카드 사용이 반환되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계정이 닫혀 지급이 승인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사가 들인 비용은, 본사의 이사회가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처리해야하는 운영 비용 (이하 "처리 수수료") 을 더하여, 계정에 부과됩니다. 그에 더하여, 계정의 납부금이 반환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본사는 부동산에 확연하게 보이도록, 주인이나 입주자가 본사가 부담한 은행 수수료와 처리 수수료를 포함하여 모든 납부금을 현금이나 머니오더나 지불보증수표로 통보 후 48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위의 i 조항에 따라 본사가 부동산의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를 f 와 g 조항들에 따라 중단하게 된다는 체납 통보를 붙이게 됩니다. 본사의 서면 체납/서비스 중지 통보는 주인의 이름 또는 "주민" 이라는 표현과 주소, 불량 체납된 금액, 서비스 중지를 피하기 위해 전액 납부 혹은

지불 약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기일, 불량채납금액과 수수료 등을 납부하기 위해 별도 지불 약정을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고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고하는 절차의 설명, 그리고 본사의 전화번호와 이 정책으로의 웹 링크를 포함하게 됩니다. 본사는 또한 주인과 본사 내 현재 등록되어있는 주인의 전화번호와 주소로 통화,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동산의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 중지를 피하기 위해, 주인은 불량채납잔액에 추가로 상황에 따라 모든 은행 수수료, 처리 수수료, 그 외 모든 수수료 등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된 납부금들은 본사에 재납부될 수 없습니다. 한 계정에서 세 번의 납부금들이 반환되거나 승인되지 않는 경우, (i) 그 세번째 반환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모든 납부금은 현금, 머니오더, 또는 지불보증수표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ii) 본사는 아래 1 조항에 따라 계정에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정에는 다른 그 어떤 지불 수단의 납부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k. 본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자가 부과한 전자수표나 크레딧/데빗카드 지불에 대한 모든 편의 수수료의 경우, 그러한 지불 수단을 이용하는 주인이나 주민이 전적으로 지불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l. 위의 i 조항에 따라, 본사는 부동산이 12개월 안에 3번 이상 납부금이 승인되지 않거나 반환된 그 어떤 계정에든 보증금(이하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부동산의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의 중지 이전 12개월 동안 계정에 부과된 월별 고지서 중 가장 높은 달의 금액의 두 배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부동산의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의 재시작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계정에 그 기간 동안 불량 채납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본사는 계정 내 모든 불량채납잔액의 납부에 대한 담보로서 그 보증금을 유지시킬 것입니다. 본사는 위의 사항에 따라 부동산의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그 계정의 불량채납잔액을 납부하기 위해 가능한 금액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보증금의 재납부가 부동산의 수도 서비스를 계속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그로부터 1년 동안 보증금을 유지시키게 됩니다. 계정의 불량채납이 없이 그로부터 1년이 지나면, 보증금은 주인에게 추후 고지서들의 부동산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 금액에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적용되는 방법으로 반환됩니다. 보증금에는 이자가 쌓이지 않습니다.

m. 매해 6월 30일자에 계정 내 본사에게 빚진 모든 불량채납잔액과 체납 수수료들은 Butte 카운티 세무서에 보고되며, 수도법 22284 와 25806 조항들에 따라 부동산에 선취특권으로 추가되며 과세됩니다.

n. 위 i 조항에 따라, 본사는 부동산의 계정에 쌓인 연체료와 체납 수수료들을 포함한 불량채납잔액이 있는 경우, 불량채납잔액이 발생한 시점에 누가 부동산을 소유했는지에 상관없이 그 어떤 부동산에든 수도법 22282.1 조항에 따라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o. 본사가 부동산이 압류 절차를 밟고 있거나 공매 처분으로 팔리고 주인 또는 주민이 부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되는 경우, 본사는, 꼭 그럴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 새로운 주인의 부동산 계정 내 모든 잔액의 납부, 그리고 부동산으로의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의 재시작을 용이하게 하도록 부동산의 계정을 대기 상태에 올려놓고 위의 특정 기간들의 경과를 90일이 넘지 않는 선에서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계정이 대기 상태에 있는 동안, 대기 요금만이 부과되며, 본사의 이사회가 임의로 정한대로의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의 일반적인 월별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불량채납잔액, 쌓인 연체료, 체납 수수료들 등을 포함한 대기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 부과된 수수료들은 계정의 잔액으로 추가됩니다. 본사가 압류된 부동산의 신탁 증서 하의 신탁관리자 또는 부동산의 공매 처분 판매 후 새로운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실제로 알게 되는 경우, 본사는 그 사람에게 부동산의 계정에 그 시점에서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리는 서면 통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잔액은 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납부되어야 하며, 만약 전액 납부되지 않는 경우, 본사는 그 계정을 대기 상태에서 빼내어 활성화시킬 것이며, 위에 언급된 특정 기간들이 다시 세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p. 본사의 총지배인은, 그의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주인의 경제적 혼란이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계정의 납부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들의 경과를 계정이 불량채납된 날로부터 90일이 넘지 않는 선에서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총지배인은 또한 부동산이 연방정부기관이나 주정부기관 소유이며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적 혹은 예산 상 상황이 부동산 계정에 제 시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계정의 납부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들의 경과를 계정이 불량채납된 날로부터 90일이 넘지 않는 선에서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연장은 부동산의 주인 혹은 주민과 본사 총지배인이 동의하는 조건에 따를 것이며 양측의 서명으로 서면 상 공식화될 것입니다.

q. 주인의 계정 고지서 상 그 어떤 요금이나 체납 수수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주인은 그 불평사항에 대해 선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본사의 총지배인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회의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주인은 본사의 이사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항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인이 요금 또는 체납 수수료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항고는 본사에 주인과 총지배인 간 회의 후 10일 이내에 수령되어야 합니다. 그 회의로부터 10일 이상이 지난 후 본사가 받은 모든 항고는 무효가 되며 그 어떤 효력도 없게 됩니다. 본사의 이사회는 본사가 항고를 받은 날로부터 6일이 지난 이후 다음 정기 회의에서 각 항고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사회가 항고에 대해 처리 중이라고 본사가 연락받은 시점에서, 본사는 추가로 체납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가 아직 중단되지 않은 경우 주인의 부동산에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이사회가 항고에 대해 심리하여 계정 상 잔액이라 결정한 모든 금액을, 심리 후 바로 다음 금요일의 오후 4시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전액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계정은 위의 e 조항에 따라 불량채납 상태로 취급됩니다.

r. 그 어떤 부동산에 대해 본사의 수도나 하수도 서비스를 중지하는 권한에 있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혹은 기관 등에 의한 일시 중지가 내려지는 경우, 그러한 일시 중지가 내려진 날짜 상 첫 서비스 중지 통보를 받아야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의 중단은 지연될 것이며 일시 중지 명령이 취소될 때까지 명령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일시 중지가 취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본사는 부동산들에 계정 내 불량채납잔액을 표시하여 개정된 첫 서비스 중지 통보 (이하 “개정된 첫 서비스 중지 통보”) 를 첨부한 일시 중지 취소 통보를 확연하게 잘 보이도록 게시할 것입니다. 개정된 첫 서비스 중지 통보에 쓰여진 불량채납잔액의 전액이 개정된 첫 서비스 중지 통보가 게시된지 5일째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본사는 부동산의 수도와 하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1.100 버전 정책은 이전의 그 어떤 버전의 정책들도 모두 대체하게 됩니다.

이 정책은 2020년 9월 22일 이사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